

제287회 정례회
2019. 6. 14.(금)

I·SEOUL·U
너와 나의 서울

「안심·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」

정관(定款) 변경 보고

2019. 6.



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

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정관(定款) 변경 보고

□ 관련 근거

- 「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(정관)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55조의3 (조례상 보고 등)

□ 변경 목적

-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
 - 「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(2019.3.28)
 -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 2019.7.31까지 권고 사항 정비(서울시 공기업담당관)
 - 권고 사항 : 정관 등 제 규정의 ‘근로자’, ‘근로자 이사’ 용어를 ‘노동자’, ‘노동자 이사’로 변경
- 제285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시의원(김정태의원님) 요구사항 반영
 - 공사 설립조례 개정(기경위 심의 '19.2.26, 본회의 의결 '19.3.8)시 삭제된 이사회 구성의 남녀 성비 조항을 정관으로 반영 요구('19.3.4)

< 의원님 주요 발언 >

▶ 최근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공사 설립조례 개정안이 우리 상임위를 통과 하였음. 조례에 남아있던 이사회 구성의 남녀 성비조항 등 일부가 정관으로 옮겨가지 않고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니, 그것을 바로 정비해 주시기 바람.”

□ 변경 내용

- 제10조(임원), 제11조(임원의 임기) 중 근로자 용어 정비
 - (현행) “근로자대표, 근로자이사, 근로자투표”를
 - (변경) “**노동자대표, 노동자이사, 노동자투표**”로 변경

- 제24조 (이사회 설치 및 구성) 중 성비 관련 내용 추가
 - (현행) “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”를
 - (변경) “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되 **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**”로 변경

- 용어 일괄 정비 관련 부칙 신설
 - (신설) 공사 각종 규정 및 내규의 제명과 본문 중 “근로자이사제”는 “노동자이사제”로, “근로자이사”는 “**노동자이사**”로, “**근로**”는 “**노동**”으로 **표기**한다.

붙임 : 1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2. 서울특별시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공문 1부. 끝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0조(임원) ① (생략)</p> <p>② 비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.</p> <p>1. 당연직 : (생략)</p> <p>2. 위촉직 :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, 농수산물 유통 관련 분야 전문가, 공기업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공사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<u>근로자</u> 대표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0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. 당연직 :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위촉직 :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노동자</u> 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 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 <u>근로자이사</u>는 임기 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<u>근로자투표</u>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 임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1조(임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---- <u>노동자이사</u>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---- <u>노동자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4조(설치 및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</p>	<p>제24조(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구성한다.

③ ~ ④ (생략)

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사규의 개정) 공사 각종 규정 및 내규의 제명과 본문 중 “근로자이사제”는 “노동자이사제”로, “근로자이사”는 “노동자이사”로, “근로”는 “노동”포기한다.

붙임 2

“소비자는 소득공제 40%, 판매자는 수수료 0%” 정답은 제로페이!

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

1. 노동정책담당관-3880(2019.3.28.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(조례 제7044호, 2019.3.28.공포·시행)」 제9조에 의거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붙임과 같이 개정(조례명칭 변경, 근로자이사제→노동자이사제, 근로자이사→노동이사)됨을 안내하오니, 기관은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**2019. 7.31.한 개정조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개요]

- 가. 시행일 : 2019. 3.28.
- 나. 주요골자 : 근로자이사제→노동자이사제, 근로자이사→노동자이사, 근로→노동
- 다. 개정근거 :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9조 (조례 제7044호)
- 라. 행정사항 :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**2019.7.31.한 관련 규정 개정**
- 정관, 이사회운영규정,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, 선거관리규정 등

붙임 관련공문 및 서울시보 등 5부. 끝.

서울특별시

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,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, 서울시투자기관, 서울시출연기관,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장

실무사무관

차미영

공기업총괄팀장

강인철

공기업담당관

03/29
고광현

협조자

시행 공기업담당관-3904 (2019.03.29.)

접수 기획팀-890

(2019.04.03)

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
/ <http://finance.seoul.go.kr/public/enterprises>

전화 2133-6772

전송 2133-0864

/ y7157@seoul.go.kr

/ 대시민공개